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6
----------	-----

제출일자 : 2013. 11.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 및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직 생활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한 퇴직준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여성보건 휴가 무급 단서조항 삭제(안 제23조제3항)
- 나. 임신 후 12주 이내 및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모성 보호시간 부여규정 신설(안 제23조제13항)
- 다.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4항)
- 라.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5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 제4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0. 21. ~ 2013. 11.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발생 또는”을 “발생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화, 전보”를 “전화나”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3의 규정에 의하여”를 “3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4의 규정에 의하여”를 “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 한”을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를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참·조퇴”를 “지각·조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을 “지각·조퇴”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 하여야”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에서부터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⑭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제18조제2항에 의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자신이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의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의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휴가허가사실을 기록하고, 군의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는 2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⑮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의2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공무원----- -----.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때는 소속기관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 ----- 제47조에 따라 ----- -----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 발생이나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 ----- 범위-----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②-----

----- 전화나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3에 따라 -----

②-----

----- 해당겸임근무자-----

제10조(파견근무) ① ----- 4에 따라 -----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령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예의 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②-----

- 해당 -----

③-----

----- 그 밖의 -----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령금법」 제23조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

③해당 -----

----- 각호의 어느 하나 -----

1. (생략)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에 따른 ----- ----- 해당 ----- ----- 범위----- -----, -----, -----. ⑥-----해당----- ----- ----- -----범위----- -----해당----- ----- -----
---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12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각·조퇴 -----
-----.

③제21조제1항에 따른 -----

-----.

④-----

-----해당-----

-----해당-----
-----해당-----

제21조(병가) ①-----

----- 각호의 어느 하나-----
----- 범위-----

----- 지각·조퇴-----

----- 제20조제3항에 따라 -----

-----.

1. (생략)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 5. (생략)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에 걸려 -----

②-----

----- 범위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
----- 각호의 어느 하나 -----

-----.

1. ----- 그 밖의 -----

2. -----
- 그 밖의 -----

3. 법률에 따라 -----

4. · 5. (현행과 같음)

6. -----
제29조의에 따른 -----

7. ----- 그 밖 -----

8. ~ 10.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5.12.30))

④ (생 략)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⑫ (생 략)

<신 설>

8.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그 밖에 -----

②-----

-----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
-----.

③여성공무원-----

-----, <단
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공
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⑥ ~ ⑫ (현행과 같음)

⑬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⑭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제18조제2항에 의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자신이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의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의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휴가허가사실을 기록하고, 군의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는 2차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⑮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 간의 <u>범위내</u>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u>법 제3조3항의</u> <u>규정에 의한</u>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25조의2(국외여행) ----- ---- <u>범위</u>----- -----. 제28조(공무원의 범위) <u>법 제3조3항에</u> <u>따른</u> ----- ----- 1. · 2. (현행과 같음)
---	---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 중 략 -----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